

#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1
----------	------

2016. 12.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 외 14명
- 나. 발의일자 : 2016년 12월 1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12월 5일

## 2. 주문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의무의 예외인 ‘갯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103) 제15조에서도 같은 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촉구 건의함.

## 3.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는 ‘갯복도식 공동주택’에서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을 염려하여 1) 특별 계단설치 2)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새시가 설치되지 못한 갯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면, 복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아 안전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실정임.
-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사다리가 진입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난계단이나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 의무의 예외인 ‘갯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2)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에서도 같은 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촉구 건의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나. 기타사항 : 없음

#### 5.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 6.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갯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 외벽에 새시와 같은 창호를 설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35조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가 불합리하므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해당조항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1일 김인호의원 외 14인이 제출하여 2016년 1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갯복도식 공동주택**<sup>1)</sup>이란 건축법상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통상 ‘**편복도형 공동주택**’이라고도 불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화재 등 비상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은 11층 이상인 층, 공동주택(갯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은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특별피난계단 의무설치대상 건축물>

일반건축물	공동주택(갯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11층 이상인 층 지하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 제외)	16층 이상인 층 지하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 제외)

- 여기서 **갯복도식 공동주택**에 한해 특별피난계단 설치의무를 제외시킨 것은 갯복도식의 경우 구조적으로 난간을 제외한 벽면이 외부로 상시 개방되어 있어 화재 시 별도의 배기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반면 **중복도식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에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갯복도식 공동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난간 상단부에 새시와 같은 창호를 추가 설치할 경우 실내공간으로 간주돼 현행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갯복도식 공동주택내 16층 이상인 층의 경우 장마 등 여름철 빗물이 들어쳐 물이 고이거나, 동절기에는 눈과 바람으로 복도가 빙판으로 변해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조제4항.

동파사고와 낙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시를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노령층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새시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sup>2)</sup>에 가까운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6층 이상 임대주택 단지<sup>3)</sup>는 총 121개 단지, 약 176개 동으로 그간 복도에 새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바 있으나, 건축 및 소방관계법에 따른 시설설치 및 구조변경과 이에 수반된 고비용을 이유로 복도에 창호가 설치된 사례는 전무함.

○ 한편, 소방관계법령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sup>4)</sup>」 제15조 제1항제1호<sup>5)</sup>에서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새시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스프링클러헤드)<sup>6)</sup>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새시설치를 어렵게 하므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새시 설치가 실제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 및 소방관계법령의 동시적 규제완화가 필요하겠음.

## □ 건의안 수정논의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건축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특정층 이상인 층에 대해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특별피난계단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복도에 새시 등 창호를 설치할 경우 기존 계단은 특별피난계단<sup>7)</sup>으로 구조 변경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특별피난계단 설치의무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호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갓복도식과 중복도식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대다수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됨.

4) 본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행정규칙(국가안전처 고시 제2016-87호)임.

5)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13개 특정소방대상물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7)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예. 특별피난계단)과 **소화설비**(예.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괄호규정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관계규정이 개정될 경우 갓복도식 공동주택 뿐 아니라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음.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은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을 개정하여 정의규정에 관련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살리면서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외기(外氣)로의 개방성을 일정부분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여단을 수 있는 창호의 최소 면적규정(설치되는 새시면적의 1/2이상)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겠음.

건의안	수정안
▶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 개방된 면적의 1/2이상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의 경우에도 건축법령 개정내용과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규제완화범위를 축소조정 할 필요가 있음. 건의안과 같이 기준이 개정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대상은 여단이 새시를 설치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준개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됨.

건의안	수정안
▶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갓복도식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을 포함한다.)

- 본 건의안은 비상상황 발생시 입주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16층 이상인 층의 갓복도형 공동주택에 한해 피난시설(특별피난계단) 과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동파·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기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요인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됨.
- 다만,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으며, 건축법령과 소방관계규정이 동시에 개정될 경우에만 본 건의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건의안의 이송부서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발령처인 국민안전처를 추가하고, 개정안에 대해 소관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이해·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

「건축법 시행령」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는 ‘갓 복도식 공동주택’에서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을 염려하여 1)특별 계단설치 2)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새시가 설치되지 못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면, 복도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아 안전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사다리가 진입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난계단이나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 의무의 예외인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2)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에서도 같은 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한다.

2016.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추구 건의안

개정 전	개정 후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p>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10.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li> <li>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li> </ol> <p>② 건축물(갯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0.29.&gt;</p>	<p>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10.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li> <li>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li> </ol> <p>② 건축물(갯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b>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b>)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0.29.&gt;</p>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p>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트·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b>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b>·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lt;개정 2008.12.15.,2011.11.24.)</li> </ol>	<p>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트·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b>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여단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b>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lt;개정2008.12.15.,2011.11.24)</li> </ol>

【붙임】 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 건축법 [법률 제13782호]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5호]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갯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소방관계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87호]

###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